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제안 이유

-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을 육림사업부지로 활용하였으나 국유림제도의 시행중단으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 분수국유림을 반환하면서 수익분배한 수익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입, 공유임야를 확대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 조성 》

○ 위 치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등 8개 지역

○ 재산규모 : 1,918,023㎡(191.8ha)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 21.0ha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7-1 16.5ha
-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4-1 25.4ha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12 6.1ha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1 3.0ha
- 괴산군 연풍면 갈산리 산38-1 38.6ha
-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7 48.5ha
-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8 11.9ha
-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산7-1 20.8ha

○ 사업기간 : 2006. 4 ~ 12(9개월)

○ 사 업 비 : 2,079백만원(도비)

□ 검토 의견

-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21ha 등 총 9필지 191.8ha를 구입하는 금번 도유림 매입의 건은 분수림제도에 분배수익금 20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내지 산림경영의 효율성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서의 증식 가치가 있는 산림이 우선적인 매입 대상입니다.

※ 분수림제도란?

- ▶ 국유림 조림시에는 산림청장과 분수림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 육림 등 산림경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목을 국가와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
 - ▶ 수익금 분배는 평균 산림청 16%, 우리도 84% 정도임.
- 금번 임야 매입배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산림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무엇보다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권 관리강화 차원에서 분수림제도를 2002년도에 폐지함에 따라 산림경영면적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감소된 만큼 대체산림을 구입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도유림 재산 증식과 산림경영강화 등을 위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현재 도유림 분포지역 및 면적 등 개략적인 현황과 함께 본 임야 매입건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임야소유주의 매도의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현재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경제림 조성계획(수종 등), 앞으로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히 그 동안 도유림 매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소유주와 사전 매매협의를 하였더라도 실제 매입시에는 매매 협의당시와 매매계약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주변여건변동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매입이 원만치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 사유림 매입에 강한 의욕이 있는 산림청이 매입과정에 개입하여 가로채기식 매수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붙임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